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1 - 57 - 182호 (사건번호 : 202108조사029)

안 건 명 쿠팡 주식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쿠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신천동)
대표자 강한승, 박대준

의결연월일 2021. 12. 22.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 배경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¹⁾인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가 접수 되었다.

1) 국내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주회사(Coupang Inc.)를 둔 전자상거래업체로 배송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유료회원(로켓와우, 월2,900원)에게 무료 배송·반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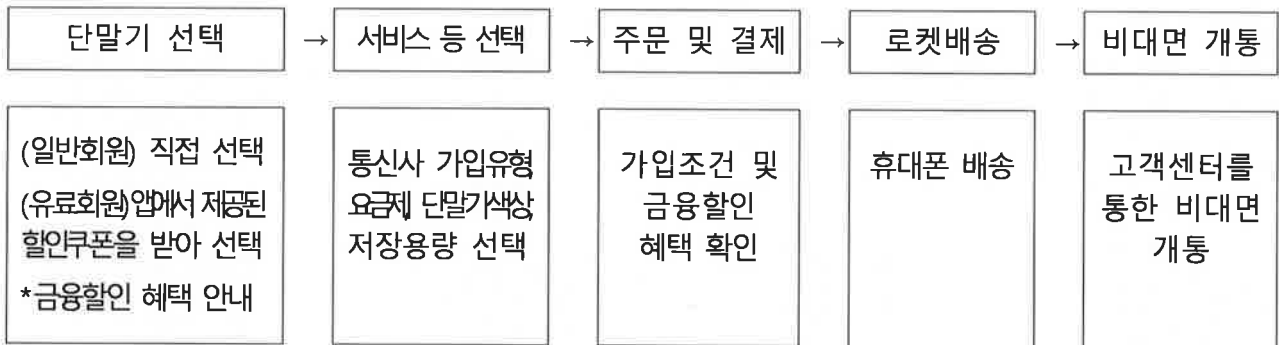
2.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과 대리점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실태점검('21.8.3.~8.25.)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쿠폰, 카드할인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조사('21.9.6.~9.27.)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3. 조사 대상은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 2개사(KT, LGU+)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20. 7. 15일부터 '21. 8. 31일까지 전체 가입건수 9,936건 이며, 온라인 전용 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쿠팡(주)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절차 >



나. 행위의 사실

4.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유치한 이동통신서비스 전체 가입자 9,936건 중 4,362건(43.9%)에게 과다 지원금을 할인쿠폰,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5만원을 지급하였다.

< 과다 지원금 지급 현황('20.7.15.~'21.8.31.) (단위 : 건) >

구분	KT				LGU+				합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전체가입자	478	733	3,856	5,067	441	757	3,671	4,869	9,936
위반건수	139	341	1,806	2,286	128	339	1,609	2,076	4,362
과다지원금 (평균)	20.3만원	23.3만원	21.6만원	21.8만원	22.8만원	29.3만원	22.2만원	23.4만원	22.5만원
위반율(%)	29.1%	46.5%	46.8%	45.1%	29.0%	44.8%	43.8%	42.6%	43.9%

5. 할인쿠폰 지급 방식은 일부 유료회원²⁾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3,545건(35.7%)에 대해 평균 26.3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 기종에 따라 유료회원은 평균 21만원(3백원~38만원)³⁾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고, 임직원은 평균 49.7만원(7.3만원~55만원)³⁾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였다.

※ 유료회원에게 대한 할인쿠폰 지급은 '21.7.23일 이후 중단하였으며, 임직원의 경우는 '21.9.15일 이후 중단하였음

< 이동통신사별 할인쿠폰 지급 현황 >

구분	KT				LGU+				합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전체가입자	478건	733건	3,856건	5,067건	441건	757건	3,671건	4,869건	9,936건
할인쿠폰 (비중%)	112건 (23.4%)	272건 (37.1%)	1,464건 (38.0%)	1,848건 (36.5%)	107건 (24.3%)	292건 (38.6%)	1,298건 (35.4%)	1,697건 (34.9%)	3,545건 (35.7%)

6. 카드즉시 할인 방식은 일반회원과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4,952건(49.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1,024건(17.3%)은 피심인의 재원⁴⁾을 평균 7.1만원 포함하여 과다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2) 로켓와우 유료회원 중 이동통신 관련 상품구매 또는 조회이력이 있는 회원에게 알림기능으로 할인쿠폰 발송하였다.

3)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과 할인 쿠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게 할인 쿠폰 금액을 조정하였다.

4) 카드사가 제공하는 월 최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즉시 할인 대상품목(가전제품, 휴대폰 등), 할인을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정하고, 월 단위 정산시 피심인의 재원이 포함되어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카드할인을 통한 초과지원금 지급현황 ('20.7.15.~'21.8.31.) (단위 : 건) >

구 분	KT				LGU+				합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소계		
전체 가입자	478	733	3,856	5,067	441	757	3,671	4,869	9,936	
카드 할인건수	163	339	1,923	2,425	154	375	1,998	2,527	4,952	
피싱인 재원	건수	28	81	471	580	24	53	367	444	1,024
	평균금액 (비중%)	3.1만원 (17%)	4.9만원 (19%)	5.7만원 (21%)	5.5만원 (21%)	5.9만원 (11%)	13.8만원 (16%)	8.7만원 (16%)	9.2만원 (15%)	7.1만원 (17%)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7.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은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8. 법 제22조(과태료)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p>◆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p> <p>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p>◆ 제22조(과태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p>

나.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할인쿠폰, 카드 할인 지급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10.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1.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위반행위의 중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 문서로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예시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사업자명))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 7. 15일부터 '21. 8. 31일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 행위 즉시 중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대표이사 ○○○

※ 공표문 크기 홈페이지 및 전용 앱 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1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i) 할인쿠폰 제공,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ii)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5.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6.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7.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8.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5,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7,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4,500,000원)을 합산한 1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결론

19.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20.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현



위 원 김 효 재



위 원 김 창 룡



위 원 안 형 환

